

의안번호	2210082
의 퇴 인	한정애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5.
추계번호	25F2554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법인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등을 과세소득에서 제외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6항(과세소득의 범위)	○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등을 양도하여 생긴 수입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제외 － 과세소득 제외대상: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및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양도하여 생긴 수입 ※ 우리사주조합: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·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(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조제4호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제6항(과세소득의 범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또는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을 양도하여 생기는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신설할 경우,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4조제6항 신설)
- 개정안에 따라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또는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을 양도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경우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현행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또는 우리사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과세대상으로 구분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자기주식 등의 규모 및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- 향후 법인별로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등을 양도하여 얻을 수입을 추계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의 양도규모와 양도가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해당 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부재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향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 등을 양도하는 규모와 양도가액 등은 기업의 실적, 주가 등의 요인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안정성, 노사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 시점에서 추정할 수 없음
 - 참고로, 2025년 5월말 기준 우리사주조합에 예탁된 주식 수 및 해당 주식의 취득 금액 등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우리사주조합 예탁 현황: 2025년 5월말 기준

	예탁조합 수(개)	예탁 주식 수(만주)	취득금액(억원)
코스피	321	32,130	92,120
코스닥	484	6,554	5,586
기타	621	7,847	6,153
계	1,426	46,531	103,859

주: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는 조합을 기준으로 집계
 자료: 한국증권금융, 「우리사주통계」, 2025.5.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